

1. 개정이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4.2.6.)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, 사전기획 대상을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”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
(안 제1조의2)

나.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진행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) 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소관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(이하 “안전·유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준수해야 한다.

제4조의2제1호 본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”라 한다) 내 수목”을 “수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4조의2(사전기획의 내용) 법 제 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학 교”라 한다) 내 수목 및 생태 환경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 2. ~ 4. (생 략)	<u>제1조의2(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) 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소관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(이하 “안전·유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준수해야 한다.</u> 제4조의2(사전기획의 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수목</u>-----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